

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 . 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('24. 7. 2.)에 따른 후속조치로, 경조사 휴가 및 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일을 변경하고 장기재직휴가 승인권자를 부서장으로 변경하여 휴가 사용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 가산 개정(안 제9조 및 별표3)

- 재직기간 : (당초) 2년 미만 → (변경) 5년 미만
- 연가가산 : (당초) 2일 가산 → (변경) 3일 가산

나. 형제자매 사망 경조사휴가 개정(안 별표4, 제11조제1항 관련)

- 경조사 일수 : (당초) 1일 → (변경) 3일

다. 장기재직휴가 승인권자 개정(안 별표5, 제11조제3항 관련)

- 승인권자 : (당초) 복무업무 총괄 부서장 → (변경) 소속 부서장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“2년”을 “5년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5 제5호 중 “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복무업무 총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”를 “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복무관리시스템에 기록·관리하여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[별표 3]

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(제9조 관련)

1.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

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별표2(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)에서 유사경력을 인정받은 사람(즉, 호봉확정시 유사경력을 인정받은 사람)

2.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

-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: 가산 안 함
-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: 3일 가산

■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[별표 4]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11조제1항 관련)

구 분	대 상	일 수
사 망	- 배우자 - 본인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	5
	- 본인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 -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	3
	- 자녀 - 자녀의 배우자	5
	- 본인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-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3
	- 본인의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-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
* 그 밖에 결혼, 출산, 입양 등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.

■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[별표 5]

장기재직휴가 운영 기준(제11조제3항 관련)

1. 재직기간 별 휴가부여 일수

재직기간	휴가일수
5년 이상 10년 미만	재직기간 중 5일
10년 이상 20년 미만	재직기간 중 15일
20년 이상	재직기간 중 30일

2. 재직기간의 산정방법 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제2항에 따름

3. 1회의 장기재직휴가는 5일 이상 10일 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.

다만, 전체 재직기간 중 1회에 한정하여 5일 미만의 잔여일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4. 장기재직휴가는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.

5. 장기재직휴가 신청자는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복무관리시스템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하며, 복무업무 총괄 부서장은 이를 공무원인사기록 카드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)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<u>2년</u>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.</p>	<p>제9조(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) ----- ----- ----- <u>5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관계법령

□ 「지방공무원법」

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제7조의7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~ ⑬ 생략

소 관 부 서		총 무 과
입 안 자	과 장	정 종 혁
	팀 장	심 대 보
	담 당 자	허 수 민 (480-6754)